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3.

발 의 자 : 주호영 · 김성원 · 강대식
조정훈 · 박충권 · 박준태
이달희 · 고동진 · 정점식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,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, 경찰공무원,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

소화하고,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2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2(의사·경찰공무원·친족의 신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) ①
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(신청 대상자를 진료한 의사에 한한다) 및 경찰공무원,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은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하는 경우, 「형법」 제317조, 「의료법」 제19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0조, 그 밖의 비밀준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·제공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신청과 관련된 내용 및 방법

과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9조의2(의사·경찰공무원·친족의 신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) 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(신청 대상자를 진료한 의사에 한한다) 및 경찰공무원,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은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신청하는 경우, 「형법」 제317조, 「의료</u>

법」 제19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0조, 그 밖의 비밀준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·제공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신청과 관련된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